울신망역사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770 발의년월일 : 2010년 6월 일 발 의 자 : 김영길·박문태·박홍규·

황세영 의원 (4명)

1. 개정이유

○ 정부조직법 일부개정(2008.2.29, 법률 제8852호)에 따라 행정자 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인용조문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 - ▶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\Rightarrow 제82조와 제84조에 따른(안 제1조)
 - ▶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⇒ 제64조에 따른다(안 제3조)
 - ▶ 각호의 1 ⇒ 각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)
 - ▶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⇒ 제53조에 따라(안 제8조제2항)
 - ▶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⇒ 제84조제3항에 따른(안 제10조)
 - ▶ 제5조의 규정에 의한 ⇒ 제5조에 따른(안 제11조)
 - ▶ 제11조의 규정에 의한,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⇒ 제11조에 따른, 제5조제2항에 따른, 제13조에 따른(안 제12조제1항, 제12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시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82조와 제84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"를 "제64조에 따른다"로 한다.

제4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"을 "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84조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. 제11조 중 "제5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5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제11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1조에 따른"으로 하며, "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5조제2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3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3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<u>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</u>	제1조 (목적) <u>제82조와 제84조에 따른</u>
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<u>제64조의 규정에</u> 의한다. ②~④(생략)	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<u>제64조에</u> <u>제64조에</u> 따른다. ②~④(현행과같음)
제4조 (위원선임 대상자격)	제4조 (위원선임 대상자격)
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	<u>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</u>
<u>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	<u>제5조제2항에 따른</u>
•	

의안심사보고서

(의 안 번호 770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0. 6. 8(화)

나. 제 출 자 : 박홍규 의원외 3명

다. 위원회 회부·심사: 2010. 6. 9(수)·2010. 6. 15(화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홍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정부조직법 일부개정(2008.2.29, 법률 제8852호)에 따라 행정자치부 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 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인용조문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 - ▶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⇒ 제82조와 제84조에 따른(안 제1조)

- ▶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⇒ 제64조에 따른다(안 제3조)
- ▶ 각호의 1 ⇒ 각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)
- ▶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⇒ 제53조에 따라(안 제8조제2항)
- ▶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⇒ 제84조제3항에 따른(안 제10조)
- ▶ 제5조의 규정에 의한 ⇒ 제5조에 따른(안 제11조)
- ▶ 제11조의 규정에 의한,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, 제13조
 의 규정에 의한 ⇒ 제11조에 따른, 제5조제2항에 따른, 제
 13조에 따른(안 제12조제1항, 제12조제2항)
- 4. 검토보고 : 없 음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